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6선거구, 장상기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 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를 각각

40퍼센트, 5층·20m 이하로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건축구역,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

가로주택정비사업 중 공공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 
추가하는 것입니다.

-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은 건축행위가 한정적이어서  
노후·불량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 
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

현재 서울시에는

19개 지구 약 1,240만<sup>m</sup><sup>2</sup>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 
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11개 자치구 14,708세대가 대부분  
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.

이에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 조건을 확대하여  
노후·불량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여건을 마련하고자  
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 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 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